의안번호	2214684
의 뢰 인	박은정의원
회 답 일	2026.1.21.
추계번호	25D6498
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,659만원, 2032년 1,575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,959만원(연평균 2,792만원)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평균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60.84	-	-	-	-	60.84	12.17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6조)	15,75	15,75	15,75	15,75	15,75	78.75	15,75
합 계	76.59	15,75	15,75	15,75	15,75	139.59	27.92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.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의 책무)	–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–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	–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 –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6조(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)	–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둠 –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–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	의무규정
4	안 제7조(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	–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8조(직원숙소 지원)	– 법무부장관은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9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	–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육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–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0조(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)	–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–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의 책무)	×	교정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5조(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	○	-
3	안 제6조(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)	○	-
4	안 제7조(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	×	교정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5	안 제8조(직원숙소 지원)	×	교정공무원의 비연고지 근무 비율 및 직원숙소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9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	×	교정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수요가 달라 일률적으로 설치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7	안 제10조(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)	×	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수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이 기존에 수립한 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

○ 경찰청의 2023년 경찰공무원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[1] 예산 5,500만원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[2]을 적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
○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, 추계기간 중 2028년에만 비용이 발생

- 안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

❑ 안 제6조의 15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5명으로 가정하여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경찰청 복지심의위원회를 준용하여 연간 16회의 자문과 3회의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

○ 경찰청 복지심의위원회 예산을 준용하여 자문료는 회당 15만원,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함

❑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❑ 경찰청의 2023년 복지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,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6,084만원으로 추계됨

1) 경찰청 "경찰복지증진" 세부사업 중 "복지현황조사 및 복지심의위원회 운영" 내역사업(2023년)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.5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
소비자물가승률(%)	2.3	2.0	1.9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2]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 (안 제5조)	60.84	-	-	-	-	60.8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)

❑ 경찰청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준용하면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운영 추가재정소요는 연 평균 7,875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자문료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민간위원 수	5	5	5	5	5	-
자문 1회당 자문료	0.15	0.15	0.15	0.15	0.15	-
연간 자문 횟수	16	16	16	16	16	-
합계	12	12	12	12	12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4]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민간위원 수	5	5	5	5	5	-
회의 1회당 회의참석수당	0.25	0.25	0.25	0.25	0.25	-
연간 회의 개최횟수	3	3	3	3	3	-
합계	3.75	3.75	3.75	3.75	3.75	18.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5]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자문료	12	12	12	12	12	-
회의참석수당	3.75	3.75	3.75	3.75	3.75	-
합계	15.75	15.75	15.75	15.75	15.75	78.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,659만원, 2032년 1,575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,959만원(연평균 2,792만원)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평균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60.84	-	-	-	-	60.84	12.17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6조)	15,75	15,75	15,75	15,75	15,75	78.75	15,75
합 계	76.59	15,75	15,75	15,75	15,75	139.59	27.92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.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